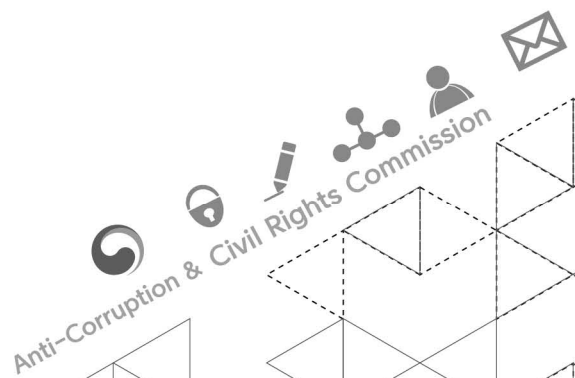


2017년 하반기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2017. 11. 1.(수) 14:30~17:30 서울 코엑스 3층, 318호

2017. 11. 3.(금) 09:30~17:30 서울 코엑스 4층, 401호

2017. 11. 17.(금) 10:00~18:00 대전역 한국철도공사 2층 대강당



국민권익위원회

■ 진행순서

☞ 11. 1. (수) 서울 코엑스 3층, 318호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00~14:30	30'	- 참석자 등록 및 안내	
14:30~14:35	5'	- 개회 및 워크숍 진행 안내	
14:35~15:55	80'	-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및 사례 소개 - 빈발질의 · 오해사항 해설	청탁금지제도과 (양종삼 과장)
15:55~16:15	20'	- 휴식 및 설문지 작성	
16:15~16:45	30'	- 신고자 보호 · 보상 안내	보호보상과 (이진아 주무관)
16:45~17:25	40'	-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청탁금지제도과, 보호보상과
17:25~17:30	5'	- 폐회	

☞ 11. 3. (금) 서울 코엑스 4층, 401호

시간		주요 내용	비고
09:00~09:30	30'	- 참석자 등록 및 안내	
09:30~09:35	5'	- 개회 및 워크숍 진행 안내	
09:35~10:55	80'	-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및 사례 소개 - 빈발질의 · 오해사항 해설	청탁금지제도과 (양종삼 과장)
10:55~11:15	20'	- 휴식 및 설문지 작성	
11:15~11:45	30'	- 신고자 보호 · 보상 안내	보호보상과 (이진아 주무관)
11:45~12:25	40'	-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청탁금지제도과, 보호보상과
12:25~12:30	5'	- 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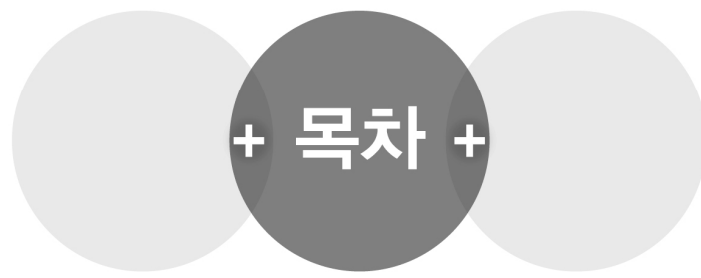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00~14:30	30'	- 참석자 등록 및 안내	
14:30~14:35	5'	- 개회 및 워크숍 진행 안내	
14:35~15:55	80'	-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및 사례 소개 - 빈발질의 · 오해사항 해설	청탁금지제도과 (양종삼 과장)
15:55~16:15	20'	- 휴식 및 설문지 작성	
16:15~16:45	30'	- 신고자 보호 · 보상 안내	보호보상과 (이진아 주무관)
16:45~17:25	40'	-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청탁금지제도과, 보호보상과
17:25~17:30	5'	- 폐회	

☞ 11. 17. (금) 대전역 한국철도공사 2층, 대강당 _ 영남지역

시간		주요 내용	비고
09:30~10:00	30'	- 참석자 등록 및 안내	
10:00~10:05	5'	- 개회 및 워크숍 진행 안내	
10:05~11:25	80'	-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및 사례 소개 - 빈발질의·오해사항 해설	청탁금지제도과 (박정구 사무관)
11:25~11:45	20'	- 휴식 및 설문지 작성	
11:45~12:15	30'	-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보호보상과 (이진아 주무관)
12:15~12:55	40'	-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청탁금지제도과, 보호보상과
12:55~13:00	5'	- 폐회	

☞ 11. 17. (금) 대전역 한국철도공사 2층, 대강당 _ 충청, 호남지역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30~15:00	30'	- 참석자 등록 및 안내	
15:00~15:05	5'	- 개회 및 워크숍 진행 안내	
15:05~16:25	80'	-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및 사례 소개 - 빈발질의·오해사항 해설	청탁금지제도과 (박정구 사무관)
16:25~16:45	20'	- 휴식 및 설문지 작성	
16:45~17:15	30'	-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보호보상과 (이진아 주무관)
17:15~17:55	40'	-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청탁금지제도과, 보호보상과
17:55~18:00	5'	- 폐회	



1. 청탁금지법의 이해 1

2. 신고자 보호 · 보상 유의사항 49

1. 청탁금지법의 이해

투명사회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

청탁금지법의 이해



투명사회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

청탁금지법의 이해



CONTENTS

- I. 입법목적 및 적용대상
- II. 부정청탁의 금지
- III. 금품등의 수수 금지
- IV.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
- V. 사례 및 판례



입법목적 및 적용대상



국민권익위원회

I. 입법목적 및 적용대상

입법목적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금지



적용대상 | 공직자등,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공무원,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Q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공공기관	적용대상 O	적용대상 X
행정기관	- 임기제 공무원 -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등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기간제 근로자 - 무기계약직 근로자
공직유관 단체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	용역업체 직원
언론사	인턴기자 등 단시간근로자	프로그램 외주제작사
학교	- 운동부 감독, 코치 - 총장, 학장, 교수 등 교원 - 기간제 교사, 유치원 교사	- 방과후교사 - 겸임교원, 명예교수

적용대상 | 공무수행사인이란?

법령상 위원회의 민간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건축위원회 위원 등

법령상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

건축물 경관 심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등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민간인

정부에 파견 나온 민간협회 직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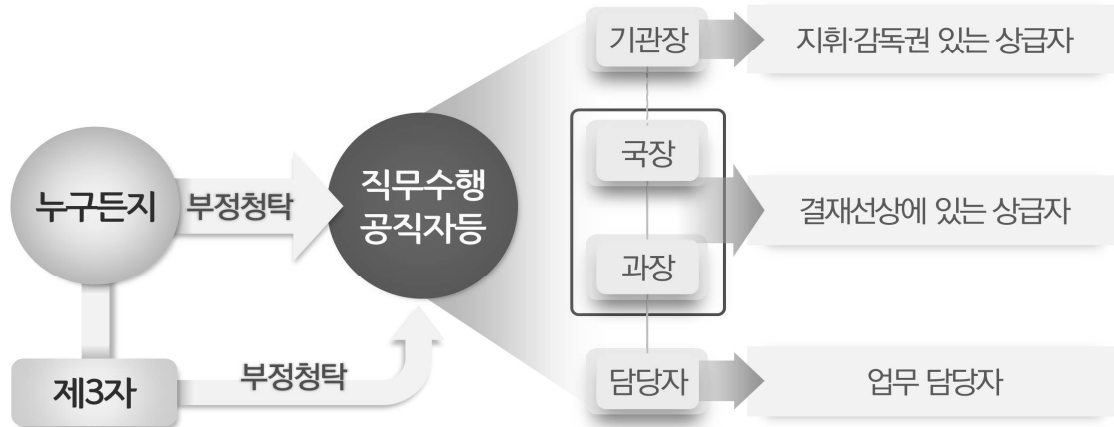
부정청탁의 금지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이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14가지 대상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의 14가지 대상직무

1 인가·허가 등 처리

2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면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 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6 입찰·경매 등 관련 직무상 비밀 누설

7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등에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사용·수익·점유 등

10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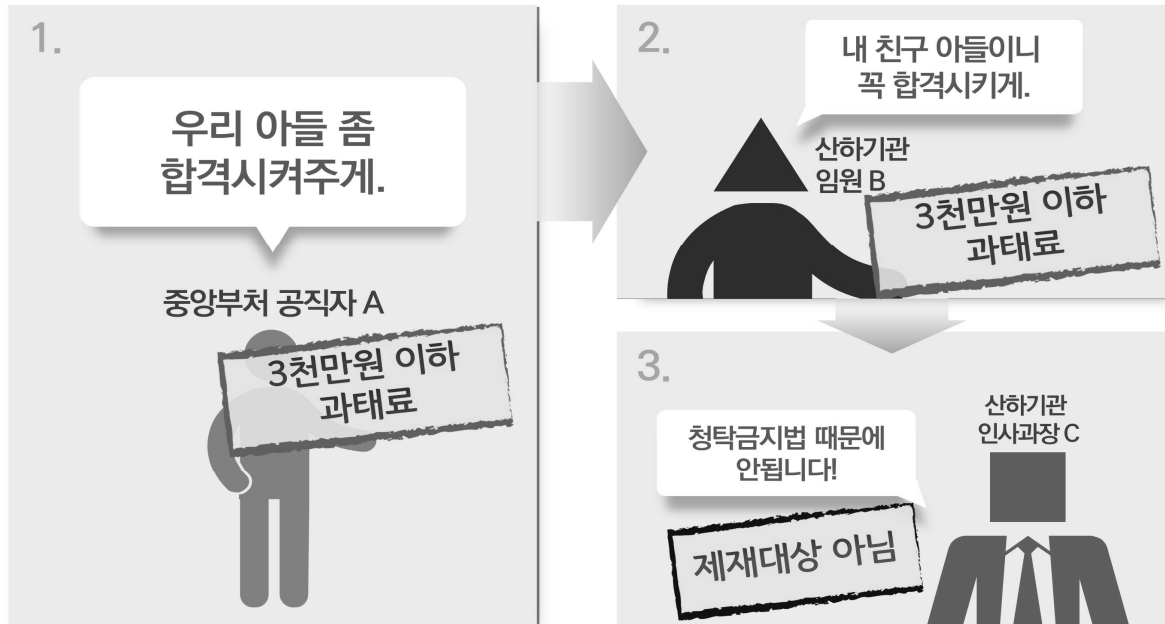
11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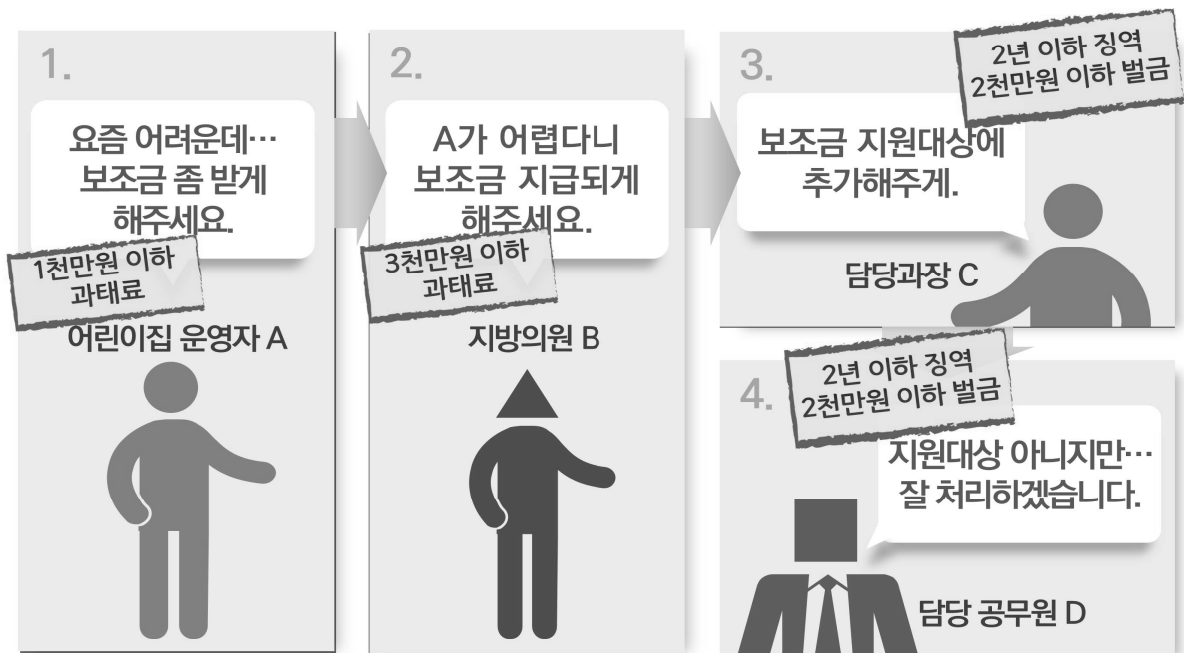
13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등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II. 부정청탁의 금지 인사 청탁



II. 부정청탁의 금지 보조금 청탁



위법사항 묵인 청탁(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과4)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7가지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2.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
4.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5.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과 증명 등 신청 및 요구
6. 질의와 상담을 통한 법령 또는 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7.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제2호, 제3호]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 공개된 장소에서 피켓 시위
- TV·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요구
- 공문을 통한 공개적 요구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

- 국회의원도 공무원으로서 적용대상
- 다만, 공익 목적으로 고충민원 전달 시 예외사유에 해당

III

금품등의 수수 금지



국민권익위원회

제재대상이 되는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8가지

- 1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등이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 3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하는 금품등
- 4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5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
- 6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 7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 등
- 8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제1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

- 공공기관 이사회 종료 후 비상임이사에게 제공하는 식사 : 허용
- 기관장이 직원 경조사에 보내는 화환 및 경조사비 : 허용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제공 목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가액 요건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란?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선물

금전, 음식물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 등 유가증권



경조사비

결혼과 장례에 한정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제3호, 제4호]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

-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 직무 내용 및 당사자의 관계
 -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 (예시) 서면 자문에 대한 자문료 지급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

- 8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O, 사실혼 배우자 X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제5호]

직원상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거나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

- 친목회 등의 요건 : ① 구성원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
② 의사결정 기관·대표자 존재
③ 정관·회칙 등 내부규정 존재
④ 구성원 전체의 회비 부담
- 회칙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 : 허용
- 친목회 회원이 아닌 퇴직 예정 공직자에게 회비로 전별금 제공 : 불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제6호]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 공식적 행사 : 행사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참석대상의 개방성,
행사의 공개성, 공식적 초청이 중요
- 통상적 범위 : 다른 유사·동종 행사 제공 수준, 정상적 비용처리절차
- 일률적 제공 : 역할별 합리적 차등 O, 특정 개인·집단에만 제공 X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제7호]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

- **판단기준** : 기관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
→ (판례) 회사 로고가 자수된 수건(2,500원)은 기념품·홍보용품에 해당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제8호]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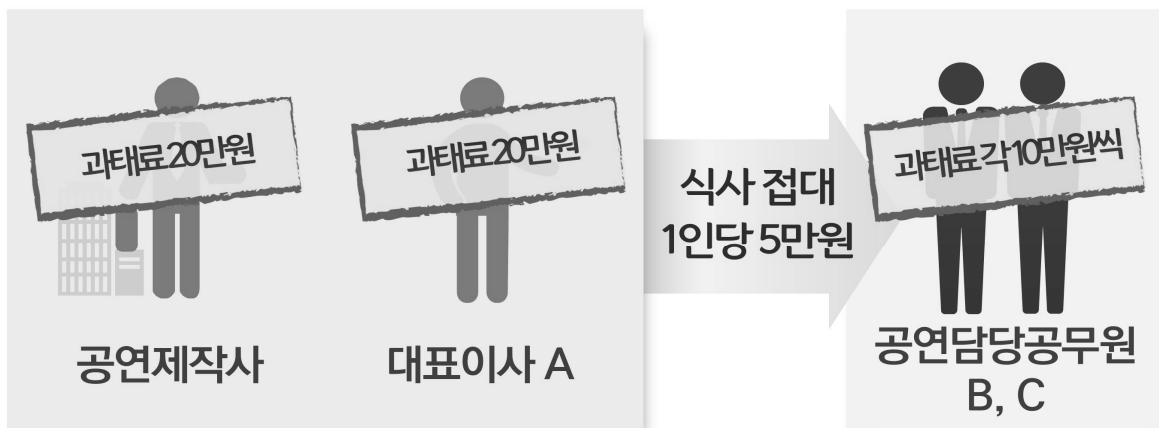
- **기부금품법** :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자발적 기탁 금품 접수
- **장학재단법** : 한국장학재단의 기부금품 모집·접수
- **문화예술진흥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부금품 수수
- **고등교육법령에 근거한 학칙 및 그 세부규정**
→ (예시) 공무원이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사회상규 : 단순한 관행만으로는 부족,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
- 판단기준 : 당사자간 관계, 직무관련성 내용, 금품내용·가액, 수수 시기·장소, 수수 경위 등
 - 결혼식 하객들에게 일률적으로 주는 음식
 - 공연 등 취재기자 본인에게 발급하는 프레스티켓
 - 학생 단체 인솔교사의 무료입장 등

양벌규정



단, 종업원에 대한 “상당한 주의감독” 다하면 사업주 면책

(참고) 미국 부패방지법 가이드 상의 사업주 면책사유

부패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약속 및 정책 확립**

명확하고 자세한 **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전 직원에게 전파**

상시적인 직원 교육 프로그램 실시

내부 고발이 가능하도록 절차와 제도 구비

부패행위자에 대해 적절하고 명확한 **징계절차 구비**

조직 내에 **부패방지 책임 담당자 지정**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

외부강의등

직무 관련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
공청회 또는 회의 등

강의·강연·기고 등

외부강의등 신고

“대가 받지 않아도” 신고

“사전” 신고

사전신고 곤란하면
2일 이내 사후 신고

국가·지자체 요청 시
사전 신고 의무 없음



외부강의등의 범위?

연주회·전시회에서 연주·공연·전시 **X**

시험출제위원으로서 시험문제 출제 **X**

회의 등이 아닌 용역·자문 **X**

법령(조례·규칙 포함)상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회의 참석 **X**

소속기관장의 사전 검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 **X**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구분	사립학교, 언론사	장관급 이상 공무원	차관급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5급 이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
1시간당 상한액	100만원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사례금 총액 한도	제한 없음	75만원	60만원	45만원	30만원
		※ 1시간 상한액 + 1시간 상한액의 50%			

외부강의등 1회 판단기준

사례금 지급주체	강의일자	강의대상	강의내용 (주제)	각각 사례금 지급 여부
같음	같음	같음	같음	✕
같음	같음	같음	다름	○
같음	같음	다름	같음	○
같음	다름	같은지 다른지 불문		○
다름	같은지 다른지 불문			○

사례금 지급주체, 강의일자, 강의대상, 강의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각각 사례금 수수 가능

IV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등의 대응방법

부정청탁을
받았다면?

거절의사
명확히 표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금품등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거절·반환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초과사례금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반환

2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위반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문서로 신고

1. 신고자 인적사항
2. 법 위반행위자 인적사항
3. 신고 경위·이유
4. 위반행위 일시·장소·내용
5. 증거자료

신고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해당 공공기관
- 감독기관
- 감사원
- 수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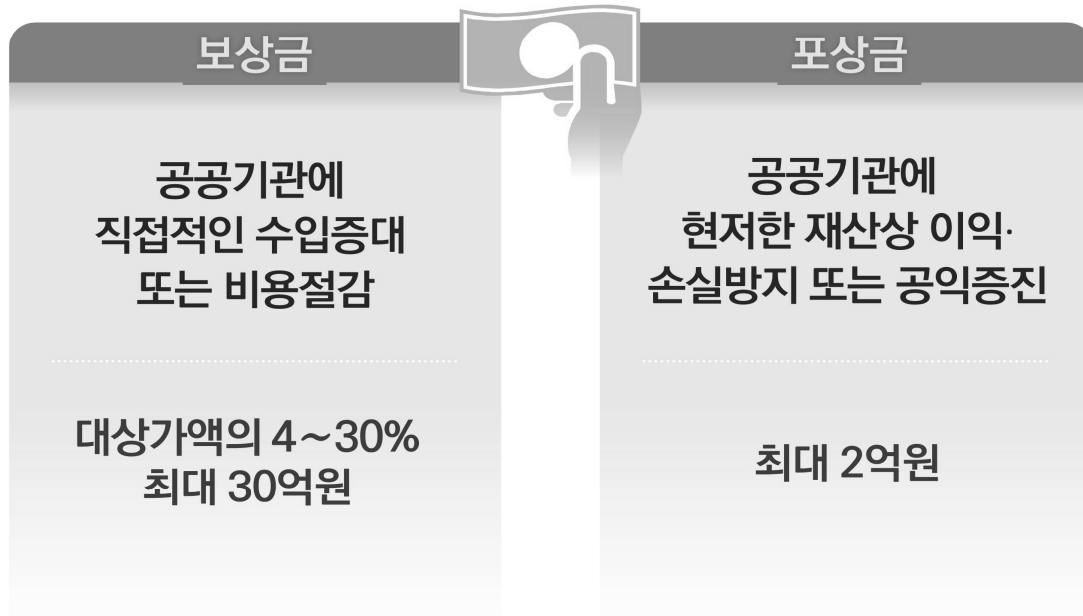
위반행위 제재기준

위반행위	제재기준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 / 공직자등	2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자	수수 금액 2~5배 과태료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수수 시 신고·반환을 하지 않은 공직자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자 보호 제도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인적사항 등 공개 금지	해고, 전보, 감봉 등 금지	형벌, 과태료, 징계 등 감면
동의 없이 공개하면 형사처벌	불이익조치하면 형사처벌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손해배상 청구 금지

신고자 보상·포상 제도



V

판례 및 사례



국민권익위원회

판례 1 :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7고단611

- **사실관계** :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이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이 발주한 시설개량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업체인 (주)○○의 회장이 제공하는 현금 200만원 수수

-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벌금 500만원 부과
- 최초 형사처벌 사례

판례 2 : 의정부지법 2016과384

- **사실관계** :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위반자가 지구대 대기 중 갑작스러운 생리현상에 담당 경찰의 도움을 받고 미안함을 느껴 담당 경찰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명함과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책상 위에 놓고 가는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

- 고도의 공정성, 청렴성을 요하는 담당 경찰에게 비교적 다액의 금품을 제공하여 비난 받아 마땅
- 다만, 수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고, 금품이 반환되어 경찰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위반자가 고령인 점을 고려
- 과태료 300만원 부과 : 제공금액 3배

판례 3 : 대전지법 2017과24, 서울중앙지법 2017과4

- 사실관계 : 공사 수주 업체 직원 A, 공사 발주 공공기관 소속 직원 B와 C, 해당 공사의 감리단장 D가 1차 노래방, 2차 노래방, 3차 음식점에서 함께 음주와 식사를 하고 업체 직원이 48만원 상당을 계산하여 금품 제공

- 공사 발주 공공기관 소속 직원은 공직자등, 해당 공사 감리단장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적용대상 O
- 제공자와 수수자 간 직무관련성 O
- 액수가 상당, 시간적으로 근접하나 3회에 걸쳐 제공된 점, 수수 동기 및 수수된 금품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
- A : 과태료 150만원 부과(제공금액 3배)
D : 과태료 50만원 부과(수수금액 2.5배)

판례 4 :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7과21

- 사실관계 : oo읍 이장협의회(마을 이장들로 구성) 회장 A가 oo읍장으로 재직하다가 시청으로 발령받은 B에게 이장협의회 명의로 전별금 30만원을 전달하여 금품 제공

- 읍장(지자체 사무 처리)과 이장협의회(주민 의견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의 관계상 직무관련성 O
- 제2호 X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X), 제5호 X (B는 이장협의회 구성원 아님), 제6호 X (이장협의회는 주최자 아니며,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한 것 아님)
- 제8호 X : 금품수수 관행 근절, 입법취지, 읍장과 이장협의회 사이에 직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점, 액수 등을 고려
- A, B : 과태료 60만원 부과(수수금액 2배) / 이장협의회 :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단체 규모, 영리성이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불처벌

판례 5 : 수원지법 2017과102702

- **사실관계** : ○○군에 본점을 두고 교통영향평가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대표자 A가 2016.12.31.까지 ○○군 건설교통과에 근무했던 공무원 B와 함께 골프를 치면서 B 몫의 골프비용 25만원을 부담

- A는 ○○군에서 교통영향평가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의 대표, B는 도로 교통 관련 용역계약 체결 및 지도·감독 업무 담당 공무원: **직무관련성 ○**
- **제8호 X**: A는 골프모임 두 달 전에 ○○군이 수행하는 사업타당성을 연구하는 용역 업무를 수행, B가 직접 지도·감독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높은 점,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공무의 공정성에 의심, B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 접대 비용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
- A : 과태료 50만원 부과(제공금액 2배)

판례 6 : 대전지법 2016과547

- **사실관계** : 공공기관에서 노래방 기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인인 위반자가 민간인 출입 관리 등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10만원 상품권을 제공하려다가 거절당한 사건

- 민간인인 위반자, 공공기관 민간인 출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간: **직무관련성 ○**
- **제2호 X**: 상품권 가액이 10만원, 선물 가액기준 5만원 초과
- **제8호 X**: 당사자 간 관계, 상품권 제공 전후 상황, 상품권 가액 등 고려
- 과태료 20만원 부과(제공금액 2배)

판례 7 : 서울남부지법 2016과204

- **사실관계** :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위반자가 조사 과정에서 친절하게 대해 준 담당 경찰에 대한 감사표시로 1만원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경찰이 거절하자 몰래 흘리고 나오는 방법으로 금품 제공

- 위반자는 현행범으로 조사받는 자로 직무관련성 O
- 제8호 X : 소액이라 하더라도 고도의 공정성·객관성을 요하는 수사기관의 경우 수사대상으로부터 금품등 수수는 엄격히 금지
- 처벌 필요성이 없는 극히 경미한 위반행위에 해당 X : 경찰이 명백히 거부하였음에도 비정상적 방법으로 제공, 업무 지장 초래
- 과태료 2만원 부과(제공금액 2배)

판례 8 : 청주지법 2016과934, 광주지법 목포지원 2016과1366

- **사실관계** : 막구조물 등 제조업체 직원인 위반자가 막구조물 등 직접 생산 여부 조사 중인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생산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담은 소포에 9천6백원 상당 과자류를 넣어 보냄

- 조사 담당 공무원과 피조사업체 직원 사이 직무관련성 O
- 제2호 X :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목적 X(직무 내용, 당사자 관계 고려)
- 제8호 X : 사회상규 X(직무내용, 당사자 관계, 수수 시기·경위)
- 직원 : 과태료 2만원(제공금액 2배) / 업체 :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2만8천원(제공금액 3배)

판례 9 : 서울북부지법 2016과290

- **사실관계** : 행정심판 청구인이 자신이 청구한 사건의 담당자가 신혼 여행 중이라는 것을 다른 공무원과의 전화통화로 우연히 알게 되어 5만원 상당의 우편환을 보냄

- 행정심판 청구인과 해당 사건 담당 공무원 사이 직무관련성 O
- 제2호 X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 X (평소 친분 X, 우편환 발송 사실 알리면서 업무처리 부탁한 점 등을 고려)
- 제8호 X : 사회상규 X (직무내용, 당사자 관계, 수수 시기·경위)
- 과태료 10만원 부과(제공금액 2배)

판례 10 : 부산지법 서부지원 2017과11

- **사실관계** : 위반자 A, B 포함 동아리 학생 9명이 3~4만원을 각출 하여 상품권, 케이크 등 총 34만원 상당 생일 선물을 교수에게 제공 하자 교수가 상품권 즉시 반환

- 학생들을 지도·평가하는 교수와 학생들 사이 직무관련성 O
- 제2호 X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X (34만원은 선물 가액기준 5만원 상당히 초과, 학생을 상시 지도·평가하는 담당 교수와 학생 간 선물은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
- A, B 각출금액(각 3만원), 금품 제공 경위, 이후 정황 등 고려
- 과태료 6만원 부과(각출금액 2배)

■ 사례 1 : 적용대상 관련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은 법 적용대상 아님
민간인 사이 또는 공직자등이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제한하지 않음

■ 사례 2 : 적용대상 관련

Q. 행정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자도 법 적용대상인가요?

A. 행정기관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이지만, 무기계약직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례 3 : 적용대상 관련

Q.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법 적용대상인가요?

A. 직원이라 함은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고,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한 모든 소속 직원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사례 4 : 적용대상 관련

Q. 공공기관의 자회사 중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 및 그 임직원들이 법 적용대상인가요?

A.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기관이 법 적용대상이므로, 자회사의 경우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되지 않는 한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례 5 : 적용대상 관련

Q.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도 법 적용대상인가요?

A. 임원은 이사 및 감사(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를 의미하므로, 비상임 이사도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사례 6 : 적용대상 관련

Q. 공직유관단체와 출연·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도 법 적용대상인가요?

A. 공직유관단체와 출연·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례 7 : 적용대상 관련

Q. 공직자등의 배우자도 법 적용대상인가요?

A.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는데, 여기에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 의미합니다.

■ 사례 8 : 적용대상 관련

Q.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금품등의 수수가 언제나 금지되나요?

A.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고,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 없으면 금지되지 않습니다.

■ 사례 9 : 적용대상 관련

Q.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배우자가 처벌받나요?

A.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은 처벌됩니다. 즉,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사례 10 : 적용대상 관련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금지

- 회사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 없다면 허용
- 직무관련성 있더라도, 내부규정에 따라 직원 모두에게 제공하는 복지혜택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

❖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았음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처벌 (배우자 처벌 X)

■ 사례 11 : 적용대상 관련

Q.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A.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경우 그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례 12 : 적용대상 관련

Q. 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공무수행과 관련 없이 받아도 처벌되나요?

A.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제8조의 금품등 수수의 금지규정이 적용되므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경우도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경우에만 금지됩니다.

■ 사례 13 : 적용대상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 : 공무수행사인 O
- 법인·단체의 소속 구성원인 개인 : 공무수행사인 X

■ 사례 14 : 적용대상 관련

Q. 「△△도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이나 자문 의뢰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나요?

A.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위임·위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례 15 : 적용대상 관련

Q. 법인·단체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 그 소속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A.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뿐만 아니라 법인, 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법 해석상 법인, 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례 16 : 부정청탁 관련

Q.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그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제재대상인가요?

A.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 행위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 사례 17 : 부정청탁 관련

Q.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제재를 받나요?

A. 제5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사례 18 : 부정청탁 관련

Q.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상급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 공직자등에게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한 경우 하급 공직자등은 처벌받나요?

A. 상급 공직자등은 하급 공직자등에 대해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하급 공직자등은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따른 것임을 안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사례 19 : 부정청탁 관련

Q. 자신을 위해서 직접 희망 부서, 승진 등 인사 고충 및 상담을 인사담당자 또는 상급자에게 하는 것(금품등 수수 없음)이 부정청탁인가요?

A. 부정청탁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해야 하고, 법령 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인사담당자나 상급자에게 자신의 인사고충이나 인사상담을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자신의 인사와 관련된 희망부서 및 승진 등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례 20 : 부정청탁 관련

Q. 공공기관인 골프장 예약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 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가 우선 예약을 부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 공공기관의 내부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골프장 등을 특정인이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례 21 : 금품등 수수 관련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아니면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도 금지**

- 판단기준 : 해당 직무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된 사이인지 여부,
직무 내용, 당사자 간 관계 등

- 조사 대상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과자류(9천6백원) 제공 → 과태료 2만원 부과
- 행정심판 사건 피청구인 담당자가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에게
음료수 1박스(1만8백원) 제공 → 과태료 2만2천원 부과
- 고소인이 담당 경찰에게 떡 1상자(4만5천원) 제공 → 과태료 9만원 부과

■ 사례 22 : 금품등 수수 관련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3만원 이하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를 의미**

법원 관내 변호사가 해당 법원 판사의 식사비 2만8천원을 몰래 지불
→ 함께 하는 식사가 아니므로 음식물 X, 과태료 11만2천원 부과

5만원 외식상품권 제공

→ 5만원 이하 외식상품권 선물은 가능하나,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 회피 목적이라면 허용되지 않음

■ 사례 23 : 금품등 수수 관련

경조사의 범위 : 결혼과 장례에 한정

-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승진 축하 난 선물
→ 승진은 경조사가 아니므로,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 가능

승진심사기간에 부친상을 당한 인사과장에게 직원이 부조금 10만원 제공
→ 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10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허용

경조사비 15만원을 받은 경우

→ 10만원 가액기준 초과 부분(5만원)만 반환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

■ 사례 24 : 금품등 수수 관련

Q.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3만원 이하 식사를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연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가액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3만원 이하 식사를 연 100회 넘게 제공한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례 25 : 금품등 수수 관련

고향 친구가 직무 관련 없는 공무원의 그린피를 내준 경우

→ 직무관련성 없으면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가능

공공기관 직원들이 소속기관 소유 골프회원권을 이용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으로서 가능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 대한 5만원 이하의 골프 접대

→ 골프 접대는 선물이 아닌 접대·향응이므로 5만원 이하라도 불가

정상가 (비회원가)

35만원

—

정회원 동반할인가

20만원

=

15만원 상당
금품 수수

■ 사례 26 : 금품등 수수 관련

각자 100만원
선물제공에해당

직원들

20명 X 5만원씩
100만원 상당
행운의 열쇠 선물



퇴임을 앞둔
직속 상사

여러 사람이 합의 하에 돈을 모아 공동으로 선물을 주면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준 사람도 각자 합산액 기준으로 처벌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 사례 27 : 금품등 수수 관련

Q. 전국 00학교 교감협의회(친목단체)의 규약에 따라 승진·전보 시 5만원 상당의 축하난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 순수 친목단체로서 각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납부한 회비로 구입하는 것임

A. 교감들 사이에는 통상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설사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또한 위 협의회가 제8조제3항제5호의 단체에 해당하고, 협의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등이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사례 28 : 금품등 수수 관련

Q.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가 대학원 진학 시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A.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도 법령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이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받는 장학금은 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 사례 29 : 금품등 수수 관련

Q. 공직자가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경품을 협찬할 것을 직무 관련이 있는 자에게 요구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국가, 지자체, 공무원 등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 사례 30 : 금품등 수수 관련

Q. 외국정부가 우리나라 공무원, 대학교수, 기자 등을 초청(외국정부
비용부담)하여 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자국의 홍보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지원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 사례 31 : 금품등 수수 관련

Q. 공로 연수에 들어가는 동료에게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이 기념패를 선물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A. 직장 동료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사례 32 : 금품등 수수 관련

Q.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았더라도 바로 반환하면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A. 선물을 반환하였더라도,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 위반 시 제21조에 따른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

■ 사례 33 : 금품등 수수 관련

Q. 직무관련자가 공직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공직자가 그 자리에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A.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만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금품등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사례 34 : 금품등 수수 관련

Q. 공직자가 자진하여 신고는 하였으나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재가 되나요?

A.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지체 없이 신고**한 경우에만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15조 제3항에 따라 제재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사례 35 : 금품등 수수 관련

Q. 금품등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하거나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에는?

A.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제재대상에 제외됩니다.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고,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합니다. ‘지체 없이’의 판단은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사례 36 : 외부강의등 관련

Q. 일정기간 여러 번 참석하는 외부강의를 일괄신고해도 되나요?

A. 강의 특성상 일정기간 계속되는 강의인 경우, 해당기간과 강의시간을 정확히 기재하여 1건으로 일괄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사례 37 : 외부강의등 관련

Q. 외부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금 상한액과 별도로 원고료를 받아도 될까요?

A.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원고료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 사례 38 : 외부강의등 관련

Q.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위반인가요?

A.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제8조의 특별규정이고, 제10조에서는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사례 39 : 외부강의등 관련

Q. 휴직자가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공직자등인 이상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므로, 휴직자의 경우에도 사전신고 후 외부강의등을 해야 하며,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도 신고 및 반환해야 합니다.

청탁이나 접대 없이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

**청탁금지법이
만들어갑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 신고자 보호 · 보상 유의사항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목차



I. 신고자 보호제도

II. 신고자 보상제도

III. 공공기관 유의사항

I. 신고자 보호제도



1.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비밀보장 제도

신분노출 금지

- 인적사항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22조 제1항 제4호)
- 권익위, 징계권자에게 위반자 징계요구 (법 제15조 제4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4항)

비밀누설 금지

- 공직자 (신고, 처리업무수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22조 제1항 제5호)

조사·형사절차 비밀보장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1.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호



비밀보장 절차



• 신분공개여부 확인요구서 접수



• 사실확인 및 조사



• 권익위 위반여부 결정



• 고발조치,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

2. 신고자·협조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신변보호 제도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방지 요구

-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

- 신고 및 협조를 이유로

-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



신변보호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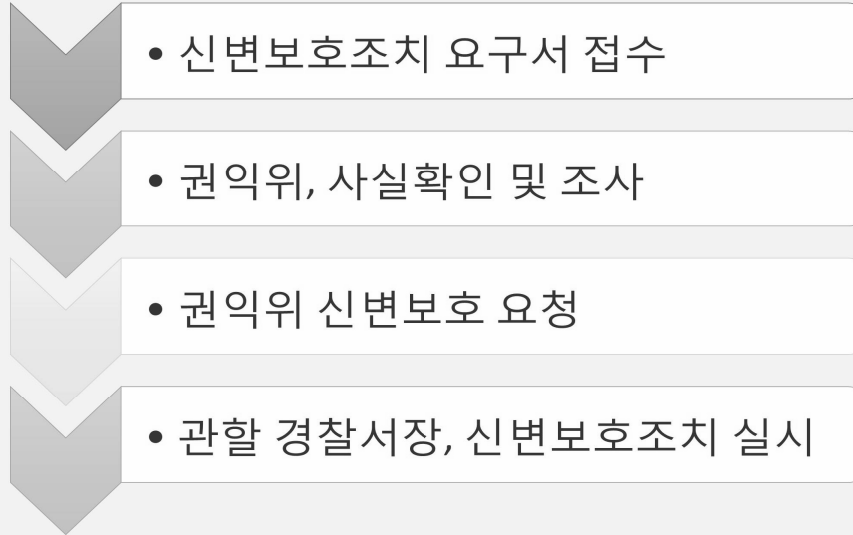
- 권익위, 경찰서와 협의하여 안전대책 마련

- 신변보호조치(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

2.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변보호



신변보호절차



3.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발생 전

*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불이익조치 발생 후

* 원상회복 요구 등 보호조치

불이익 조치자 등에 대한 처벌

* 파면, 해고 등 신분상실 불이익조치자

→ 2년 징역, 2천만원 벌금

* 그 외 신분상, 근무상 불이익조치자

→ 1년 징역, 1천만원 벌금

* 불이익조치자에 대해 형사처벌 외 징계

*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 미이행자

→ 2년 징역, 2천만원 벌금

3.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유형



신분상 불이익

- 파면,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 하는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직무 미부여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

- 성과평가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 블랙리스트 작성,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 인·허가 등의 취소
-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등

3.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발생 전

불이익조치 금지권고

-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
- 불이익조치 금지신청(별도의 신청기간 없음)
- 불이익조치의 종류(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사실확인 및
조사



권익위 결정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3.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발생 후

원상회복요구 등 보호조치

- 원상회복요구 등 보호신청(불이익조치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권익위,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권고
- 화해의 권고(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신청



사실확인 및
조사



권익위 결정



원상회복 요구
등 보호조치

3.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기타 보호제도

이행강제금 부과

신고자·협조자 책임감면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불이익조치의 추정

신고자 보호 사례



사례1

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 편취 신고



요양병원 내부 직원

담당 경찰관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신고자 신상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



권익위, 비밀보장의무 위반한
경찰관에 대해 징계요구

사례2

정부출연기관의
퇴직금 과다지급 사실 신고



기관 내부 직원

“해임처분”

원상회복 요구 등



해당 기관에 해임처분 취소 및 원상회복,
기관장에는 과태료 1,000만 원 부과

II. 보상금·포상금 제도

보상 · 포상제도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증대와 비용 절감



신고 활성화에 도움



부정청탁예방 및
척결에 기여

보상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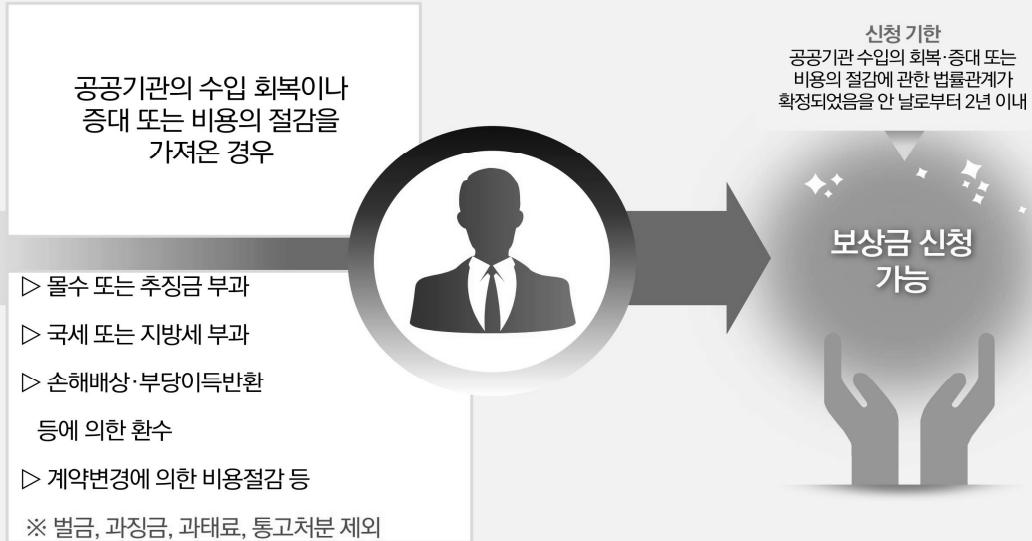
공공기관 수입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포상금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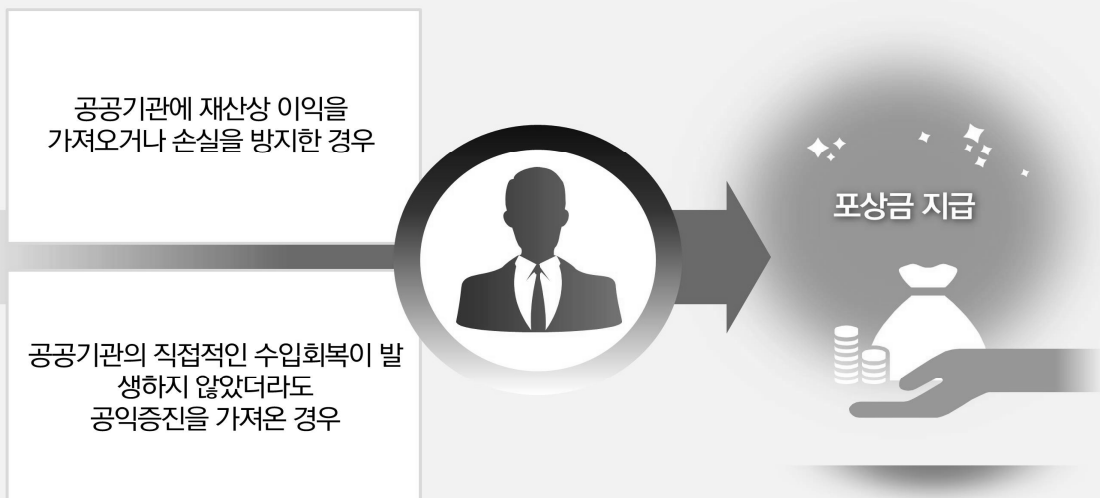
1. 보상금 제도

보상금



2. 포상금 제도

포상금



보상금 지급 사례

사례1

A업체가 공기업에 원가를 부풀려
장비를 납품한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



A업체에 근무하던 B씨



11억 6백여만원
보상금 지급
2002년 부패신고자보상금 제도
도입 이래 최고 보상금

A업체가 편취한 금액 263억여원
전액을 환수 조치



위원회

사례2

지자체가 발주한 토목공사에 대한
시공업체의 날림공사 의혹을
위원회에 신고



신고자 C씨



4억 5백여만원
보상금 지급

시공업체가 편취한 금액 54억
7천여만원 전액 환수 조치



위원회

포상금 지급 사례

사례1

대학연구소에서 시험데이터결과
조작하여 불량약품 유통
의혹 신고



신고자 A씨



5천만원
포상금 지급
2002년 부패신고자포상금 제도
도입 이래 최고 포상금

제약업체의 비리근절과 공공
안전에 공헌을 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위원회

사례2

고등학교 운동부 감독의
부정입학 조건으로
금품 수수 의혹을 신고



신고자 C씨



1천 5백만원
포상금 지급

40여명에 이르는 구조적
비리사건으로 유사비리 예방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위원회

III. 공공기관 유의사항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 안내

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노출방지

내부신고자에 대한 기관차원 보복행위 금지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기적 교육 실시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권익위 추천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